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 공고 변경 및 추가 계획

2022. 11.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1. 배경

-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농장·축사 내 오염원 유입 차단을 위한 농장 단위 차단방역 강화 필요

* 16건(강원 1, 경기 2, 경북 2, 전남 1, 전북 1, 충남 1, 충북 8) 발생

- AI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가금농장에 사람·차량 출입제한 등 행정명령(11건)과 방역기준 공고(9건)를 시행 중이나,
-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 확인되고 있어 방역조치의 실효성 확보 추진

* 농장주의 출입자 통제 미흡, 외부인과 출입차량 미소독, 소독시설 고장·미운영 등

⇒ 기존 방역기준 공고 보완 및 추가로 농장 단위 차단방역 조치 강화

2. 법적근거

- (행정명령) 농식품부 장관이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지자체장에게 소독·이동제한·출입통제 등 명령 지시

- (법적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시)

- 농식품부 장관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자체장에게 사람·가축·차량 등에 대한 격리·폐쇄 명령 조치 지시를 할 수 있음
-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사람·가축·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소독 조치 등 명령 가능

- (위반시 처분) 행정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고) 농식품부 장관이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정하여 방역기준 공고(9건) 시행

○ (법적 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및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 2의4](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 5.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

○ (위반시 처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병원성 AI 발생 시 보상금 감액*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라 방역기준 위반 시 5% 감액

3. 행정명령 · 공고 보완 및 추가 내용

① 행정명령(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변경

○ 現 행정명령에 따라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만 진입을 허용하고, 소독 실시

* 가축·사료·분뇨·퇴비·깔짚 운송 차량

⇒ 차량 운전자는 농장주 또는 종사자 관리 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고, 농장 내 진입 시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하차 시 방역복·덧신 착용 및 손과 운전석 내부를 소독하도록 명령 변경

* 농장주의 허락 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고, 소독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농장주 또는 종사자에 의해 확인받아야 함

② 가축소유자등의 방역기준 변경 및 추가 공고

○ 가금농장 내로 사람·차량 등이 진입할 경우, 소유자등의 관리 및 통제 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며,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한 소독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

- 소유자등은 농장 내 진입이 허용된 특정 축산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하차할 경우 방역복·덧신 착용 및 손과 운전석 내부를 철저히 소독 실시

* 가축운송, 사료운송, 분뇨·퇴비운송, 깔짚차량

- 산란계 외 메추리·종계·종오리 농장의 난좌 및 알 운반용 도구 등 소독
 - 1회용 난좌를 사용하지 않는 종란의 난좌를 부화장으로 반·출입 할 경우, 반드시 세척·소독·건조 등의 조치를 할 것
- 동절기 대비 소유자등의 소독설비 동파 방지 조치(공고 변경)
 - 소유자등은 소독설비가 기상 여건에 관계 없이 소독이 가능하도록 동파방지* 조치를 하고, 소독설비의 정상 작동 및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며, 소독설비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시 정비·보수
 - * 열선, 환수장치, 단열재, 보온재, 보안덮개 등 조치
- 안전사고 등 위험성, 지형적 여건 등으로 생석회 도포가 어려울 경우 2m 이상의 차량소독 매트를 깔고 소독제를 충분히 도포하거나, 차량 소독조를 운영할 것
 - 유기물은 수시로 제거하는 등 오염을 최소화하고, 소독제는 차량 출입 전 충분히 도포할 것
 - * 동결하거나 유기물이 부착되어 오염시 소독효과가 감소함

4. 조치 계획

□ 행정명령 및 공고문 확정 보고('22.11.20.)

- 행정명령은 지자체에 명령 지시, 우리 부는 방역기준 공고

□ 관계기관·지자체 등 공문 시달(11.20.), 집중 지도·홍보(11.20.~)

- (농식품부) 공고 및 홈페이지 게시, 공문 시달
- (검역본부) 전국 가금농장·축산시설·차량 등에 문자 발송(KAHIS)
- (지자체) 지자체는 행정명령 내용 공고 및 명령서 발급
- (단체 등) 가금 생산자단체 및 계열화사업자, 농협 등을 통해 가금농장, 축산시설 및 축산차량 등에 홍보

- <붙임> 1. '22/'23년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 1부
- 2 행정명령 공고(안) 1부
3. 방역기준 공고(안) 1부
4. 격리·억류·이동제한·소독·교통차단·출입통제 명령서 1부
5.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1부
6. 가금농장 진입 전 신고 접수대장 1부

붙임 1

'22/'23년 시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

구분	주요 내용	대상	별치
행정명령 (11건)	1.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 시설에서 소독	축산차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 진입 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 진입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축산차량	
	3.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알운반차량	
	4.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산란계, 메추리 농장	
	5.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분뇨차량	
	6.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사료차량	
	7.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축산차량 및 종사자	
	8.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가금농장	
	9.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10.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11. 전국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방사 사육 금지	가금농장	-
공고 (9건)	1.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가금농장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고병원성 AI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2.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가금농장	
	3.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가금농장	
	4. 1회용 난좌 사용 및 알 운반용 합판·파레트 등 도구·장비 세척·소독	산란계농장	
	5.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오리농장	
	6.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열지 않도록 점검 *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가금농장	
	7.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가금농장	
	8.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가금농장	
	9.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가금농장	

1.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 제목 :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가금류 관련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 지역 : 전국

○ 대상 :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깎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시료채취·방역차량

○ 기간 : 2022. 10. 1. ~ 2023. 2. 28.

* 다만, 변경된 공고내용은 11.23일부터 적용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내용 : 상기 기간 중 시설출입차량은 가금농장* 및 가금류 관련 축산 관계 시설**을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 발급

* 가금농장 : 축산법에 따른 허가·등록 대상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종계·종오리), 부화업

** 축산 관계 시설 : 가금류 관련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시, 차량의 바퀴 등 하부와 운전석 등 내부를 필히 소독하여야 하며, 가금농장 방문 시 가금농장의 소유자·종사자 등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 시설출입차량은 방문하려는 가금농장의 내부(울타리 안)로 진입 여부와 관계없이 동 명령의 적용대상임

* (예시) 계란 수집을 위해 산란계 농장의 입구 앞에 있는 환적장소까지만 가는 경우 예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 발급 필요

- (예외기준) 농식품부에서 별도 지정·통보한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으로 살아있는 가금을 운송하는 경우, 거점소독시설을 거치지 않고 해당 도축장에 진입할 수 있음(다만,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은 방문한 농장에서 서명한 소독확인증을 보관하여야 함)

○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8.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관련 행정명령

□ 제목 :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출입통제 행정명령

○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 지역 : 전국

○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소유자등”이라 한다), 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 백신접종팀, 상하차반, 가축진료인력, 컨설팅·인공수정인력, 동물약품업체 관계자, 계열화 사업자 소속 직원,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 인력

○ 기간 : 2022. 10. 1. ~ 2023. 2. 28.

* 다만, 다만, 변경된 공고내용은 11.23일부터 적용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내용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 관계자는 아래 출입통제 행정명령을 준수

구분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2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 ² 초과 농장)	○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진입금지 및 농장 진입 허용 차량은 농장주 등의 관리 하에 농장 진입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알 운반, 동물의약품운반, 난좌 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등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진입을 금지함 - 불가피하게 농장 내 진입이 필요한 특정 축산차량은 가축 운송, 사료운송, 분뇨·퇴비운송, 깔짚차량을 의미하며, 해당 차량은 농장 진입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농장 진입 시 차량 외부와 내부를 필히 재차 소독하여야 함 - 차량의 운전자는 농장주 또는 종사자의 관리 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되, 농장 내 진입 시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하차할 경우 방역복·덧신 착용 및 손과 운전석 내부를 철저히 소독 실시 * 농장 관계자의 허락 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고, 소독 및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농장주 또는 종사자에 의해 확인받아야 함

구분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 알 운반차량은 알의 상차를 위해 산란계·종계·종오리·메추리 농장의 출입구 인근에 있는 고압분무기로 소독이 가능한 거리의 구획된 장소까지는 진입이 가능하며,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의 기자재·장비·차량(지게차 포함) 등도 농장 출입 시 마다 각각 소독하여야 함 * 알의 상차 장소는 농장의 장비·차량 및 외부 알 운반차량이 최대한 교차하지 않도록 줄 또는 띠 등으로 구획하고, 해당 장소의 바닥도 상차 작업 전후 마다 소독 실시 - 축산차량이 아닌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농장 종사자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도 진입금지 대상이며, 긴급 또는 비상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농장 진입 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함
3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소재지 : 세종시 부강면, 천안시 풍세면, 김제시 용지면, 나주시 공산면, 영주시 장수면 및 안정면, 칠곡군 지천면, 봉화군 봉화읍, 양산시 상북면)	○ 산란계 밀집단지 내로 외부 알 운반차량의 진입금지 - 알 운반차량은 산란계 밀집단지 외부에 있는 소독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밀집단지에서 생산된 계란을 상차하여야 함 * 상차 장소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소독필증 발급)하고, 상차 장소에서 상차 전후 마다 소독 실시 - 다만, 시·군에서 밀집단지 출입구 인근 등에 구획되어 있고 소독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까지는 진입이 가능함 * 시·군은 환적장소별 소독관리자를 지정해 명령 이행 여부 및 소독 실시상황 등을 상시 점검 -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단지의 기자재·장비·차량(지게차 포함) 등은 농장·단지에 출입 시 마다 각각 소독하여야 함
4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 (사육시설 50m ² 초과 농장)	○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의 가금 분뇨 반출 제한 -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의 가금 분뇨는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반출한 날로부터 2주 이상 경과 후 반출)하여야 함 - 다만, 농장 내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사육 가금(폐사체 포함)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이 가능하며, 분뇨가 포장된 비료 등 완제품으로 가공된 경우 또는 퇴비화된 분뇨는 동 명령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정밀검사 결과는 시료채취일로부터 1주일 내 검사한 실적까지 인정

구분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5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 ² 초과 농장) 및 분뇨처리시설	○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 간 이동금지 -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은 시·도 간 이동을 금지하되, 분뇨 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타 시·도를 출입해야 하는 경우, 출발지 관할 지자체(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이동승인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은 신청한 1개 농장 또는 축산시설만 출입이 가능하며,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행정명령에 따라 농장 또는 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및 소독필증 발급 필요 * 시·도가 다르나 연접한 지역(시군 경계가 맞닿은 곳)은 시·도 내 이동으로 인정 ** 이동승인 차량 정보는 이동승인서를 발급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검역본부 및 도착지 관할 지자체와 공유
6	종계농장 및 종오리 농장 (사육시설 50m ² 초과 농장)	○ 종계 및 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운반차량 진입금지 - 지대(포대)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종계 및 종오리 농장 내로 진입 금지 * 농장 외부에 지대사료 하차 후 해당 농장의 장비 등을 이용하여 농장 내로 이동하고, 작업 전·후에 사료 이동에 사용한 장비와 이동경로는 세척·소독 실시 - 다만, 농장 내 축사와 떨어져 있는 별도 창고 또는 전실과 같이 축사 내 사육공간과 별도 구획·차단되어 사람과 도구 등 출입 시 소독 등 방역조치가 가능하다고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시설에 지대사료를 보관하는 경우, 농장 출입구에서 차량 내외부 소독 후 해당 시설까지는 출입이 가능
7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 ² 초과 농장)	○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제한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은 가금 농장 진입 전 농장 관할 시·군·구에 진입 목적과 일시, 진입 인원 등을 사전 신고(유선·문자·팩스 등) -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을 운송하는 차량은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되며, 팀원·반원 등 인력이 농장에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손·신발 소독을 실시(1회용 덧신 가능)하고 장비·도구·기자재 등 소독 후 농장 반입 - 백신접종 및 상하차반은 농장에서 작업 후 해당 농장주(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를 관할 시군구에 당일 제출

구분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 가금농장에 외부 축산 관계자 등 진입제한 - (수의사 등 가축 진료인력) 가축질병 검사·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가금농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 - (컨설팅·인공수정 인력, 동물약품 및 계열화사업자 관계자,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 인력)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장에 진입 제한, 부득이하게 진입하는 경우에도 축사 내 진입은 금지 - 농장주 등의 요청으로 부득이 농장에 진입 시 관할 시·군·구에 사전 신고 및 농장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손·신발 소독 실시(1회용 덧신 가능), 농장에서 작업 후 해당 농장주(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를 관할 시·군·구에 당일 제출
8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 ² 초과 농장)	○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2개 이상의 가금농장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은 1개 농장(A)에서 사용하는 파레트·합판·왕겨살포기를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한 다른 농장(A 이외)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 * 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소유한 가금농장의 경우를 포함함

○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9.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제한 행정명령

□ 제목 : 전국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제한

○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및 전파 차단

○ 지역 : 전국

○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 기간 : 2022. 10. 1. ~ 2023. 2. 28.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22.10.1.~10.30.까지 계도기간(현장지도 중심)을 운영하되, 고병원성 AI 발생(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70일령 미만), 오리, 산란성계 및 육계 유통을 금지함

* 전통시장은 상설시장 내 가금판매소, 3·5일장 등에서 가축거래상인 등이 가금을 판매하는
곳을 모두 포함함

- 유통제한 대상 가금이 아닌 가금을 유통하는 경우, 각 지자체(시군구)
에서 지정한 곳에서만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 전·후 마다 해당 시설·장소
소독 및 해당 가금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이동승인서(검사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함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이 가금 거래 시 이동
승인서 휴대 의무

○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000호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4호 라목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1. 가금 사육농장의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가금)의 소유자등(사육시설 50㎡ 초과)은 농장 진입로에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할 것
- 생석회 도포 요령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할 것
 - (폭) 농장 진입로에 2m 이상 도포
 - (두께)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도포하고 유지할 것
 - 비·눈이 내린 후에는 도포 상태를 점검할 것
- 생석회 도포 시 다음의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

- 생석회가 눈·피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마스크·고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도포할 것
- 도포된 생석회와 산성 소독제가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생석회의 화학반응*에 따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변에 비닐 등 가연성 물질이 없도록 주의할 것

* 생석회는 물과 접촉하면 200℃ 이상의 고열을 내므로 화재에 유의해야 함

- 안전사고 등 위험성, 지형적 여건 등으로 생석회 도포가 어려울 경우, 2m 이상의 차량소독 매트를 깔고 소독제를 충분히 도포하거나, 차량 소독조를 운영할 것

- 유기물은 수시로 제거하는 등 오염을 최소화하고, 소독제는 차량 출입 전 충분히 도포할 것

* 동결하거나 유기물이 부착되어 오염 시 소독효과가 감소함

2.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 가금의 소유자등은 법 제17조의3제1항 각호의 시설출입차량이 농장에 진입*할 경우,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소독필증 1부를 보관할 것

* 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가금의 알 또는 사료 등 상하차 등을 위해 울타리 또는 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 가금의 소유자등은 농경지·텃밭 등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를 가금 사육농장 외부에 보관할 것. 다만, 불가피하게 가금 사육농장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세척·소독 후에 진입할 것

4. 산란계, 메추리, 종계, 종오리 농장의 난좌 및 알 운반용 도구 등 소독

- 알을 취급할 때 1회용 난좌를 사용할 것. 다만, 불가피하게 1회용 난좌가 아닌 난좌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금 사육농장에 반입·반출시 각각 세척·소독할 것

- 1회용 난좌를 사용하지 않는 종란의 난좌는 부화장으로 반·출입 시 반드시 세척·소독·건조 등의 조치를 할 것
- 알의 운반에 사용되는 합판·파레트 등을 사용할 때마다 세척·소독할 것. 새로이 구입하거나 회수된 합판, 파레트 등 자재는 가금 사육농장에 반입하기 전에 세척·소독할 것

5. 오리농장의 왕겨살포기 등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설치·운영

- 오리농장의 왕겨살포기, 로터리기계 등을 농장 또는 축사 내 진입 시킬 경우, 농장 및 축사 진입 전 바퀴 등을 세척·소독하고 이동하려는 경로를 사전에 소독할 것
- 축사 간 오리를 분동하는 경우,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된 분동통로를 이용하고 분동 시 이동통로와 분동하려는 축사를 소독할 것
- 왕겨살포기 및 경운기(로터리기계 등)는 농장 간 공용 사용하지 말 것

6. 가금 사육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설비 동파 방지 조치와 이상 확인 시 즉시 정비·보수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가금)의 소유자등(사육시설 50m² 초과)은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1단계 소독),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소독)할 것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 2의4] 1. 공통기준 단서 규정에 따라, 50m² 이상 1,000m² 미만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장의 경우에는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소독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소독설비에 대해 기상 여건에 관계없이 소독이 가능하도록 동파방지 조치를 하고, 소독시설의 정상 작동 및 이상 여부를 확인하며, 소독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시 정비·보수할 것

7.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 등으로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할 것

* 차량과 사람의 출입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의10]에 따른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함

8.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전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 등으로 축사에 출입하지 않을 것
 - 부득이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입문에 신발 소독조와 손 소독설비(또는 소독제), 축사 전용 신발을 구비·운영할 것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전실 청소·소독 등 전실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축사에 출입 시 손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할 것

9.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가금의 소유자 등은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의 차량은 진입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가금농장 내로 진입이 금지된 알 운반, 동물의약품운반, 난좌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농장 종사자(농장주·관리자 등 포함)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 등에 대하여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내로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다만, 긴급 또는 비상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농장 진입 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함
 - 산란계·종계·종오리·메추리 농장의 경우, 알 운반차량은 알의 상차를

위해 농장 내 출입구 인근에 있는 고압분무기로 소독이 가능한 거리의
구획된 장소까지는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1단계) 및 고압
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한 후
진입이 가능하며,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의 기자재·장비·
차량(지게차 포함) 등도 상차 작업 전·후에 각각 소독하여야 함

10. 가금농장 내 진입 시 소유자등의 관리 및 통제 하에 진입을 허용 하고, 소독 등 관리할 것

- 가금농장 내로 사람·차량(진입이 허용된 특정 차량에 한함) 등이 진입할
경우, 소유자등의 허락을 받고 소유자등의 관리 및 통제 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며,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한 소독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
- 소유자등은 농장 내 진입이 허용된 특정 축산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하차할 경우 방역복·덧신
착용 및 손과 운전석 내부를 철저히 소독 실시

* 가축운송, 사료운송, 분뇨·퇴비운송, 깔짚차량

□ 시행기간 : '22. 10. 1. ~ '23. 2. 28.(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 다만, 변경된 공고내용은 11.23일부터 적용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금농장에서 고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을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2022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4

격리·억류·이동제한·소독·교통차단·출입통제 명령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8.29.>

격리·억류·이동제한·소독·교통차단·출입통제 명령서

제 호

가축사육시설	농장명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명령의 내용	명령의 구분					명령의 이유		
	이행장소					이행기간		대상 두수
명령대상	가축	축종	품종	성별	연령	귀표(개체) 번호	특징	비고
	사람							
	차량							
준수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같은 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격리·억류·이동제한·소독·교통차단·출입통제를 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른 격리·억류·이동제한·소독·교통차단·출입통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본인(팀장)을 포함한 _____원들은 _____시도 _____시군구 소재
_____농장을 _____년 _____월 _____일에 _____목적으로 방문
하였으며, 아래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만약,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해 상기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확인 사항(해당란에 ○ 표시) -

1. 농장 진입 전 방역교육을 받았음 : 예 / 아니오
2. 등록된 축산차량(GPS 장착)을 통해 농장으로 이동하였고,
농장 외부에 차량을 주차함 : 예 / 아니오
3. 농장 출입 시 새 방역복과 신발(덧신) 등을 착용하였고,
농장 및 축사 진입 전 손과 신발 소독을 실시하였음 : 예 / 아니오
4. 붙임 출입자 명단(다음페이지)를 작성하였음 : 예 / 아니오
5. 농장에서 사용한 방역복과 덧신 등은 폐기하였고
의복과 손, 신발, 사용도구를 소독하였음 : 예 / 아니오

팀장 성명 : **연락처 :** **서명**

확인서(농장주 또는 관리자 서명)

☞ 본인은 농장 출입자들이 상기의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농장주(관리자) 성명 : **연락처 :** **서명**

가금농장 출입자 명단(출입자 모두 작성)

[illegible]

붙임 6

가금농장 진입 전 신고 접수대장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등 외부인 가금농장 진입 전 신고접수 대장

※ 접수를 받은 시군구에서 작성·보관(아래 항목을 포함하되, 자체 실정에 맞게 추가 가능하며, 전산파일로 관리 가능)

연번	일시	신고자	신고자 연락처	신고방법	진입 목적	진입 농장	농장 주소	진입일자	진입 인원	방역 교육	접수자
1	'21.0.00, 00 : 00	홍길동	010 - 0000 - 0000	전화/문자/ 팩스	백신접종	00농장	00	'21.00.00		실시	000